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수출 안내서' 개정 알림

1. 우리 처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한 축산물 수출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귀 기관(부서) 및 협회에서는 수출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동 안내서는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축산물 수출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요약) 1부.
2. 축산물 수출 안내서 개정(전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6개 지방장청(54개 전부서), 본부(54개 전부서), 한국육가공협회, (사)한국유가공협회,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주무관 김연화 사무관 강성필 수입식품정책과전결2021.12.16. 장 김솔

협조자

시행 수입식품정책과-7249 (2021. 12.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158 팩스번호 043-719-2150 / zangdars777@korea.kr / 대국민 공개